

Article

동중국해 중·일 유전 개발 분쟁을 통해 본 양국의
해양경계획정에 대한 입장 연구

양희철¹ · 박성욱^{2*} · 박세헌²

¹College of Law, National Taiwan University
21 Hsu-Chow Road, Taipei(100), Taiwan

²한국해양연구원 해양과학기술정책연구센터
(425-600) 경기도 안산시 안산우체국 사서함 29호

**Perspective on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through Oil and Gas
Development Dispute between China and Japan
in the East China Sea**

Hee Cheol Yang¹, Seong Wook Park^{2*}, and Se-Hun Park²

¹College of Law, National Taiwan University
21 Hsu-Chow Road, Taipei(100), Taiwan

²Ocean Policy Center, KORDI
Ansan P.O. Box 29, Seoul 425-600, Korea

Abstract : There are disputes for oil and gas development between China and Japan in the East China Sea. These involve the area where China is already carrying out activities of oil and gas development and where Japan is proclaiming its EEZ. China insists that the Chinese activities on oil and gas development area are being carried out within the Chinese jurisdictional waters even if the median line principle of Japanese proclamation is applied in delimitation. Indeed, the permit for Japanese development is causing disputes between China and Japan because its permit allows development in the waters adjacent to Chinese development area. In the event, the core of this dispute around the oil and gas field in the East China Sea relates to issues of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and issues of resources acquisition with both states. Chinese policy on oil and gas development is to first consider development issues in accordance with a median line principle where waters toward to China from the median line should be developed by China and the area toward Japan from the median line within the Chinese continental shelf should be jointly developed. However, the Japanese position is that the East China Sea should be jointly developed, and Japan hopes to eventually convince China to accept its median line delimitation. With on-going development of such issues, Korea should establish a strategy of negotiation based on analyses of resource distributional conditions and other strategic factors in the Korean delimitation area. In particular, Korea should prepare and make the best use of joint development zone established in an agreement between the ROK and Japan concerning the development of the southern part of continental shelf adjacent to both states.

Key words : East China Sea, Exclusive Economic Zone, continental shelf,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natural prolongation, median line principle, joint development

1. 서 론

동중국해(East China Sea)는 중국에서 東海道로 약칭되기도 하며, 중국 동쪽에 위치한 해역으로서 2차 대전 전, 일본은 이 해역을 동지나해(東支那海)로 칭하기도 하였다. 동중국해는 광의의 범위로 중국 以東의 해역인 黃海와 대한해협을 포함하고, 협의의 동중국해는 중국 동부 長江 입구 외측의 해역으로, 남쪽으로는 대만해협과 접하고 북쪽으로는 황해(長江 입구 북측에서 한국 제주도를 연결한 선)와 마주하며, 동쪽으로는 태평양과 인접하여 유구군도를 경계로 한다.¹⁾ 동중국해의 면적은 약 70여만 km²이며, 평균 수심은 약 1,000 m이고 가장 깊은 곳은 오키나와 해구로서 약 2,700 m에 달한다.²⁾ 이곳 동중국해 대륙붕에는 풍부한 석유자원이 매장되어 있으며, 또한 중국 해양전략의 중요한 요충지이기도 하다.³⁾

동중국해는 공동 연안국인 한국, 일본,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이 중첩되기 때문에 해양경계 확정 대상

수역이다. 동중국해의 해양경계 확정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는, 오키나와 해구의 대륙붕 경계확정시의 효과 부여 문제와 세 국가간의 경계가 이루어지는 공동등거리점(tri-junction)에 대한 합의문제 등이다. 중국과 일본은 동중국해에서 조어대(Diao-yu-Tai, 일본명 Senkaku Islands)⁴⁾에 대한 영유권 문제와 함께,⁵⁾ 최근에는 동중국해의 유전 및 가스전(이하 ‘油田’이라 함) 자원 개발문제를 둘러싸고 심각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동중국해 경계확정과 관련하여, 중국은 “자연적 연장” 원칙을 기조로 하여 당사국과는 공평의 원칙에 따라 협의하여 경계를 확정한다는 것, 일본은 “중간선 원칙”을 획정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⁶⁾ 중국은 동중국해에서 오키나와 해구가 일본과의 대륙붕에 대한 자연적 분계선을 이루고 있는 비공유대륙붕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일본은 오키나와 해구는 단순한 함몰에 불과할 뿐 대륙붕의 자연적 분계선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⁷⁾

¹⁾국제 수로기구(International Hydrographic Bureau)의 정의에 의하면, 동중국해의 북계는 장강입구 이북의 江蘇해안에서 북위 33°17'을 따라 제주도 서안(이 선은 동중국해와 황해의 분계선이기도 하다)까지, 다시 제주도 동단에서 직선으로 일본 五道열도(Goto Retto)중의 福江島(Fukue Jima)까지 이르고, 九州島 서안을 따라 남하하여 大隅諸島(Osumi Shoto), 土噶喇 군도(Tokara Gunto), 奄美 군도(Amami Gunto), 오키나와군도(Okinawa Gunto)를 거쳐 先島군도(Sakishima Gunto)에 이른다. 동중국해의 남계는 先島군도중 與那國島(Yonaguni Jima)에서 직선을 타고 대만 동북부의 三貂角까지, 여기서 다시 대만 동북 해안을 타고 富貴角에 이르고, 마지막으로 富貴角에서 직선으로 중국 북건설의 海壇島까지를 연결한 곳을 말한다. International Hydrographic Bureau. 1953. Limits of Oceans and Seas. Special Publication No. 23. 3rd ed. Imprimerie Monegasque, Monte-Carlo, Monaco. p.31.

²⁾Fairbridge, R.W. ed. 1968. The Encyclopedia of Geomorphology, Encyclopedia of Earth Sciences Series, 3. Reinhold Book Corp., New York. p.184.

³⁾동중국해 지하자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馬英九. 1986. 從新海洋法論釣魚臺列嶼與東海劃界問題. 中正書局, 台北.; 劉錫江 外 3人. 1992. 釣魚臺列嶼附近海洋環境與資源之調查與研究. 臺灣行政院研究發展考核委員會, 台北.; Bosum, W., G.D. Burton, and S.H. Brasse. 1990. On the current geological knowledge of East China Sea and its petroleum potential : Abstract, *Oil Gas J.*, 9, 100-108.; Wageman, J.M., T.W.C. Hilde, and K.O. Emery. 1970. Structural framework of East China Sea and Yellow Sea. *AAPG Bull.*, 54, 1611-1643.

⁴⁾조어대는 대만의 동북방으로부터 약 190 km, 일본의 오키나와로부터 서남방 약 350 km 떨어진 동중국해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도 상에서 보면 북위 25°44'(南小島 南端)에서 25°56'(黃尾嶼 北端)과 동경 123°30'(釣魚嶼 西端)에서 124°34'(赤尾嶼 東端) 사이에 있다. 조어대는 5개의 작은 무인도와 3개의 암초로 구성되며, 위치 및 거리상으로는 7개의 섬이 서쪽에 함께 모여 있으며 다른 하나가 동쪽으로 떨어져 있는, 즉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조어대는 이러한 8개의 작은 섬들의 총칭이며, 그 명칭은 그중 가장 큰 섬인 釣魚嶼에서 유래한다. 丘宏達. 1996. 釣魚臺列嶼主權爭執問題及其解決方法的研究. 中國國際法學會編, 中國國際法與國際法事務年報, 第10號. 臺灣商務印書館發行, 台北. p.21-23.; 吳天穎. 1994. 甲午戰前釣魚列嶼歸屬考-兼質日本原敏雄諸教授, 初版, 中國社會科學文獻出版社, 北京. p.93-94.; 盛承楠. 1972. 釣魚臺列嶼探藥記. 學粹, 台北. 第14卷, 第2期, p.58 등 관련 자료를 재정리하여 구성함.

⁵⁾Taiwan Law Society and Taiwan Institute of International Law. 1997. International Law Conference on the Dispute over the Diaoyu/Senkaku Islands between Taiwan and Japan. Taiwan, Iran County : 1997. 4. 2-3.; Cheng, T. 1974. The Sino-Japanese Dispute Over the Tiao-yu-tai(Senkaku) Islands and the law of Territorial Acquisition, *Virginia J. Int. Law*, 14, p.221.; 國立編譯館. 1992. 釣魚臺簡介, 台北. p.72.; 立法委員傅崑成國會辦公室編印. 1997. 釣魚臺列嶼 - 日本海上保安本部實際調查的相關資料. p.47.; 林田富. 1999. 釣魚臺列嶼主權歸屬之研究. 五南圖書出版公司, 台北. p.11.

⁶⁾중국의 일부 학자는 일본과 우리나라가 1974년 체결한 대륙붕공동개발협정에 근거하여 일본의 중간선 원칙입장이 탄력을 가질 수 있음을 주장한다. 즉, 공동개발협정에서 설정하고 있는 공동개발 구역은 한국과 일본 양국 해역의 중간선에서 대부분 일본쪽으로 설정되었는데, 중국으로서는 일본이 중간선 원칙 고수라는 입장에서 탄력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결정적인 의의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馬英九. 1986. 從新海洋法論釣魚臺列嶼與東海劃界問題. 中正書局, 台北. p.78.

⁷⁾魏敏 主編. 1995. 海洋法. 法律出版社, 北京. p.183.; 李丙朝, 李仲範. 1996. 國際法新講. 一潮閣, 서울. p.582. 각주 19참조.

조어대 문제는 영유권 분쟁과⁸⁾ 함께 경계획정에 있어서 해당 도서가 차지하는 효과 부여문제가 대두되는데, 현재 조어대를 점유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조어대가 자체 대륙붕을 갖는다는 입장이고,⁹⁾ 역사적 권원을 주장하는 중국은 이들 섬이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3항에서 규정하는 “인간거주 또는 독자적인 경제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암석”으로서 배타적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한다.¹⁰⁾ 결국 이에 관하여는 해양법협약 제121조 3항의 해석 및 적용문제가 대두될 것이다.

동중국해 분쟁에서 油田 문제는 중국과 일본이 각자의 해역이라고 주장하는 쟁의 지역에서 油田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대립 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¹¹⁾ 현재 양국간 분쟁의 직접적 대상이 되고 있는 곳은 이른바 西湖 해역을¹²⁾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동 지역은 중국이 현재 油田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곳이자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 선포¹³⁾ 지역이기도 하다. 중국측에서는 중국이 개발하고 있는 지역이 설령 일본이 주장하는 중간선 원칙에 따라 획정한다고 가정하여도, 해당 油田 개발 수역이 경계선의 외측(중국측)에 있으며, 오히려 일본측이 개발을 승인한 지역이 중국의 개발구역에 접근함으로써 중국과 일본의 분쟁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

하고 있다.¹⁴⁾ 결국 동중국해 油田을 둘러싼 분쟁의 핵심에는 해양경계획정이라는 문제와 함께 양국간 자원 획득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군산에서 250 km 떨어진 우리 EEZ 내의 서해 2광구에서 한국석유공사가 석유탐사작업을 할 때, 이미 중국측으로 부터 “서해 2광구에서 원유를 생산하던 400 km 정도 떨어진 중국 산둥반도 앞 평라이(蓬萊) 유전의 원유가 한국 쪽으로 흘러갈 수 있다”며 여섯 차례나 항의를 받은 바 있다.¹⁵⁾ 이러한 점을 볼 때, 중일 양국이 동중국해 유전 개발을 둘러싸고 주장하는 견해와 협상방식은 향후 우리와 중국간의 자원개발 분쟁해결을 위한 좋은 시사점과 대응방향을 제시해 주리라 본다. 본 논문에서는 동중국해에서 유전을 둘러싼 중일간의 분쟁을 통해 양국간의 해양경계획정에 대한 입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정책적 대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2. 해양경계획정 분쟁 및 자원개발경쟁

해양경계획정 분쟁

양국간 경계획정 원칙

중·일 양국의 유전 개발을 둘러싼 분쟁은 동중국해의

⁸⁾중국은 釣魚臺에 대한 역사적 권원(historic title)과 지속적 사용, 일본의 무주지에 대한 선점(occupation)을 조어대 영유권 주장의 주된 근거로 하고 있다. Japanes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ed. Nihon Gaiko Bunsho(Diplomatic Documents of Japan), 18, p.575. ; Von Glahn, G. 1986. Law Among Nations, 5th ed. MacMillan, New York. p.311. ; Kenneth Y. Choy. 1997. Overview of Taiwan's Legal and Jurisdictional considerations in the Diaoyu/Senkaku Dispute, International Law Conference on the Dispute over the Diaoyu/Senkaku Islands between Taiwan and Japan. Iran County, Taiwan. 1997. 4.2-3. p.9. ; 박춘호 교수 역시 釣魚臺가 항해목적으로 사용되었고, 1895년 釣魚臺가 무주지가 아니었음을 확신할 정도로 규칙적 사용이 있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Choon-Ho Park. 1972. Continental shelf issues in the Yellow Sea and the East China Sea, Occasional Paper No.15. Law of the Sea Institute, Univ. Rhode Island.

⁹⁾Park, Choon Ho, et al. ed. 1996.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nd East Asia. Institute of East and West Studies, Yonsei Univ. p.98. ; 馬英九. 1986. 從新海洋法論釣魚臺列嶼與東海劃界問題. 中正書局, 台北. p.133-137.

¹⁰⁾馬英九. 1986. 從新海洋法論釣魚臺列嶼與東海劃界問題. 中正書局, 台北. p.133. ; Jeanette Greenfield. 1992. China's Practice in the Law of the Sea. Clarendon Press. Oxford. p.130. ; 邵津 譯, 中內清文. 1980. 東中國海和日本海的劃界問題. 國外法學. 第4期, p.54.

¹¹⁾중일간 동중국해 자원분쟁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 ▶1968년 유엔, 동중국해에 석유가 매장됐다는 조사보고서 발표 ▶1969년 일본, 데이코쿠(帝國) 석유회사가 시굴권 설정 신청 ▶1971년 중국, 외교부 성명 통해 조어대(센카쿠) 열도 영유권 주장 ▶2004년 6월 일본, 중국에 동중국해 유전 공동개발 요구. 중국 거부 ▶2004년 8월 중국, 춘샤오 천연가스관 부설공사 시작. 현대중공업 시공 ▶2005년 2월 일본, 중국의 춘샤오 유전개발이 일본 자원 훼손 우려 있다며 개발 중지 요구. 중국 거부 ▶2005년 7월 일본, 데이코쿠석유에 천연가스 탐사 및 개발 승인 ▶2005년 9월 덴와이텐 가스전에서 생산 시작

¹²⁾西湖 해역은 동중국해에 있는 지역으로써, 상해와 寧波의 동쪽 약 400 km에 위치하고 있다. 이 지역에는 엄청난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는데, 春曉·天外天·殘雪·斷橋 및 平湖 등의 油田으로 유명하다. 서해 해역은 약 500 km의 길이에 달하고, 중국의 동해 해안선과 상호 평행하게 마주하고 있다. 일본 經濟産業省은 동중국해에 있는 세곳의 주요 油田에 일본 명칭을 부여하고 있는데, 春曉油田은 “白樺”, 斷橋油田은 “楠”, 冷泉油田은 “桔梗”이라 명하고 있다. 2005년 9월 27일에는, 중국이 현재 개발중인 天外天油田을 “浬”으로 칭하고 있다.

¹³⁾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1996년 6월 1일 법률 제74호)」, 제1조 2항 ; 중국의 관련 정책에 대하여는 1996년 5월 15일 통과된 「유엔해양법 협약 비준에 관한 결정」 및 1997년 6월 26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통과되고, 1998년 6월 공포된 「중화인민공화국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법」 참조.

¹⁴⁾Japan-China Oil Dipute Escalates. The Washington Post, October 22, 2005.

¹⁵⁾중앙일보. 중·일, 동중국해 다툼 왜 문제인가요, 2005. 9. 22.

가장 넓은 곳이 360해리 밖에 되지 않아,¹⁶⁾ 유엔해양법협약¹⁷⁾에 따라 만일 양국이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또는 대륙붕)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중첩된 지역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는 점이다. 특히 동북아시아의 한중일 3국은 자국에 유리한 원칙¹⁸⁾을 통해 배타적경제수역/대륙붕을 획정하고자 하기 때문에 문제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이 주장하는 중일간 배타적경제수역/대륙붕은 중간선 원칙에 따라 중국과 일본 해안선의 중간으로 획정하는 것인데, 이는 중국이 영토의 자연 연장원칙에 따라 획정하고자 하는 의도와 배치되는 것이다.¹⁹⁾ 더구나 중국이 주장하는 영토의 자연적 연장은 오키나와 해구가 중국과 일본의 자연적 경계선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²⁰⁾

자원적 요소

동중국해 문제를 보다 복잡하게 하는 것은 해당 수역에 매장된 油田과 같은 에너지 개발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다. 중국과 일본정부가 몇 차례의 협상을 통해서도 동중국해 자원의 귀속과 개발문제에 대하여 만족할 만한 해답을 찾지 못한 것 역시, 해당 해역의 귀속이 자국의 경제적 및 안보적 문제에 직접적 관련을 가지기 때문이다.

동중국해는 중국, 일본, 한국의 영토로 둘러싸인 반폐쇄

해역으로서 아시아의 페르시아 만으로 불리운다. 동중국해는 이미 여러 연구 보고서²¹⁾를 통해 막대한 자연자원과 대량의 석유 및 천연가스를 매장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며,²²⁾ 이 중 중국 대륙붕상의 천연가스 매장량은 약 5조 m³에 달하여, 적어도 사우디아라비아의 천연가스 매장량의 8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또한 대륙붕의 석유 매장량은 약 1천억 배럴로서 이는 미국 원유 저장량의 5배에 달하는 것이다. 특히 동중국해에서 가장 풍부한 油田을 매장하고 있는 곳으로는 오키나와 해구이며, 이 외에 중국과 일본의 침예한 분쟁 대상인 조어대 부근 해역에도 약 945억 배럴 정도의 원유가 매장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²³⁾

중국은 광활한 영토에도 불구하고 육지자원은 세계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개인 평균 광산자원량 또한 전세계 평균의 1/2 정도에 불과하다.²⁴⁾ 이는 2050년 중국의 인구가 16억에 달한다고 볼 때, 중국 정부는 육지 자원이나 기타 환경에서 충당할 수 있는 한계에 엄청난 압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²⁵⁾

중국의 석유 수입 의존도는 이미 40%에 이르고, 2004년 수입 원유는 1.2억 톤에 달하였다. 만일 중국이 향후 15년 경제성장률을 7%에서 유지하고자 한다면, 매년 원유 수요는 4% 증가된 양이 필요하고, 이는 중국이 필요

¹⁶⁾가장 좁은 곳은 167해리, 평균 폭은 216해리에 불과하다. Chase, T., H. Menard, and J. Mammerrickx. 1970. Bathymetry of the North Pacific, Chart No.5. The Scripps Institution of Oceanography and Institute of Marine Resources, La Jolla, California. ; Shepard, F.P., K.O. Emory, and H.R. Gould. 1949. Distribution of Sediments on East Asiatic Continental Shelf. Occasional Paper No.9. Allan Hancock Foundation. ; Hiroshi Niino and K.O. Emery. 1961. Sediments of Shallow Portions of East China Sea and South China Sea. *Geol. Soc. Am. Bull.*, 72, p.731에서 재인용.

¹⁷⁾유엔해양법협약은 60개국이 비준 또는 가입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된 후 발효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가이아나가 1993년 11월 16일 60번째로 비준서를 유엔에 기탁함으로써 1994년 11월 16일 협약이 발효되었다. 2006년 1월 현재 149개국이 가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6년 1월 29일, 중국은 1996년 6월 7일, 일본은 1996년 6월 20일 유엔에 비준서를 기탁하여 3국 모두 협약의 당사국이다.

¹⁸⁾일본은 중간선(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1조 2항), 중국은 자연연장과 국제법을 기초로 공평원칙에 따라 합의(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 우리나라는 국제법을 기초로 관계국과의 합의(배타적경제수역법 제2조 2항)로 3국이 모두 자국에 유리한 원칙을 주장하고 있다.

¹⁹⁾袁古洁. 2001. 國際海洋劃界的理論與實踐. 法律出版社, 北京. p.187.

²⁰⁾중국의 대륙붕 자연연장 주장은 한국이 일본과의 동중국해 대륙붕 경계획정 협상에서 주장하는 것과 일치한다.

²¹⁾1968년 10월 UN의 아시아 극동 경제위원회(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Asia and the Far East : ECAFE)의 「아시아 근해의 광물자원탐사를 위한 공동위원회」(Committee for Coordination of Joint Prospecting for Mineral Resources in Asian Offshore Areas : CCOP)의 후원하에 실시된 Emery 보고서는 대만과 일본사이의 해역에 세계최대의 석유자원이 매장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를 함으로서 관련 연안국의 비상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Emery, K.O., Y. Hayashi, T.W.C. Hilde, T. Kobayashi, J.H. Koo, C.Y. Meng, H. Niino, J.H. Osterhagen, L.M. Reynolds, J.M. Wageman, C.S. Wang, and S.J. Yang. 1969. Geological structure and some water characteristic of the East China Sea and the Yellow Sea. *UNECAFE/CCOP Technical Bull.*, 2, 4-43.

²²⁾Jan-Olaf Willums. 1977. China's Offshore Petroleum. *China Business Rev.*, July-August, 1977. p.6-4. ; Meyerhoff, A.A. and Jan-Olaf Willums. 1979. China's Petroleum Still A Guessing Game. *Offshore*. January, 1979. p.55-56.

²³⁾夜光新聞(中國), 2005. 10. 1.

²⁴⁾중국의 개인 평균 육지면적은 0.008 km²에 불과하여 세계 개인 평균 0.3 km²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중국 국가해양국 “2002年 中國海洋衛星 應用報告”, 2003년 6월.

²⁵⁾宏維華, 錢雪梅. 2000. 海灣石油新論. 社會科學文獻出版社, 北京. p.4-29.

로 하는 원유 공급과 수요 차가 매년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의 자체적인 석유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석유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해양으로부터 석유를 얻어야 하는 것은 이미 중국 석유 개발의 새로운 전략이 되고 있다. 중국은 2010년 전에 해양석유 개발 규모를 2003년의 2배로 끌어 올릴 계획을 하고 있다.²⁶⁾ 중국 해양석유공사는 호주 의 대규모 건설회사와 광둥 혜주시(惠州市)에 총 20억 US \$에 달하는 석유 정제공장을 건설할 계약서를 체결함으로써 광둥성의 석유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또한, 일본의 帝國 석유회사는 8월 26일 중국이 반대할지라도 일본 정부의 보호하에 동중국해에서 유전탐사를 진행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²⁷⁾

중국과 일본 양국은 향후 자원의 충분한 보유가 사회경제 발전을 위한 전제가 되리라는 것을 확실히 인식하고 있다. 현재의 육지 자원개발이 갈수록 한계에 달하고, 토

지와 담수, 광산 등의 자원고갈 문제에 직면하여, 자원확보가 국가안전과 직결된다는 공식에 따르고 있기 때문에 동중국해에서의 자원쟁탈이 양보할 수 없는 대상임은 자명하다.

양국간 자원개발 경쟁

중국의 개발상황

중국석유화공주식회사(中國石油化工股份有限公司),²⁹⁾ 중국해양석유유한회사(中國海洋石油有限公司),³⁰⁾ 네덜란드의 Royal Dutch/Shell,³¹⁾ 미국의 Unocal 등은 2003년 8월 19일 2005년 중반에 西湖 해역에서 油田을 개발할 것을 선포하였고, 2007년에는 매년 25억km³ 정도의 천연가스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2004년 9월 29일, 합작 대상인 네덜란드의 Royal Dutch/Shell와 미국의 Unocal은 해당 지역 자원의 상업성을 의심하여 탈퇴를 선언하였다.³²⁾ 이들 회사가 진행하기로 한 석유계약

Table 1. Marine resources of China²⁸⁾.

Average value of resources per capita in China (vs. World per capita average)				
Land area		Water resource		Mine resource
27%		25%		50%
China places in world marine resources (ranking)				
Waters occupancy per capita		Ratio of marine area to land area		Coastline coefficient
122		108		94
China's Marine fisheries and oil resources(Occupancy rates in the World)				
Total allowable catch			Undeveloped oil deposits	
1.75%			12%	
Ratio of exploited marine resources in China				
Oil and Gas	Tourism	Placer mine	Shallow sea beach	Inshore fishery
5%	30%	5%	2%	overexploitation

²⁶⁾2003년 중국의 원유 생산량은 1.69억 톤이고, 이 중 해양석유 생산량은 3,366만톤에 불과하였다.

²⁷⁾臺灣 自由時報, 2005. 8. 29. ; 中國石油新聞網, 2005. 1. 7.

²⁸⁾王芳 외 2인. 2004. 我國海洋資源可持續發展戰略初探. 王曙光 主編. 海洋開發戰略研究. 海洋出版社, 北京. p.186-187.

²⁹⁾중국석유화공주식회사는 2000년 2월 설립된 거대한 에너지 화공기업으로서, 석유의 탐사·개발·채취·정제·수송·판매 및 화공상품의 생산에 관한 일체를 수행하는 기업이다. 회사는 중국 중앙정부 소유이며, 홍콩과 뉴욕·런던 및 상해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다. 중국 석유화공주식회사는 중국석유천연가스 주식회사(中國石油天然氣股份有限公司), 중국해양석유유한회사(中國海洋石油有限公司)와 공동으로 중국의 석유시장을 점유하고 있으며, 이들 두 회사와 비교할 때 비교적 화공업무에 치중하고 있으나 중국 최대의 석유제품 및 화공상품 생산회사이며, 원유생산은 두 번째 규모를 자랑한다.

³⁰⁾홍콩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공업회사로서, 주로 중국 해상의 유전과 천연가스를 생산하여 개발한다. 회사는 홍콩에 등록되어 있으며, 2004년 총자산 가치는 56,717,461,000위엔에 달한다.

³¹⁾세계 제2대 석유회사로서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사를 두고 있다. Shell China는 2000년 중국 해양석유와 합자로 석유화공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약 40억 US\$에 달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중국이 체결한 가장 큰 액수의 외국합자에 해당한다.

³²⁾중국석유화공주식회사, Shell, Unocal 등은 동중국해 석유 천연가스 투자와 관련하여 5개항의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보도되는데, 해당 합의 중에 계약관련 규정은 협약에 대한 서명 만료 1년 후에 외국측 회사는 투자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國際金融報(中國), 2003. 9. 30.

해역은 동중국해의 西湖 해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각각 (1) 春曉 (2) 寶雲亭 (3) 27/05 (4) 12/21 (5) 20/14이며, 이들 계약해역은 上海 동남방으로 약 500 km의 동중국해 대륙붕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약 22,000 km²에 이른다. 서명한 석유탐사 계약에 의하면, 27/05, 12/21, 20/14 계약지역에서는 상업성을 발견한 후에 개발기와 생산기에 중국석유화공주식회사와 중국해양석유유한회사가 각각 30%, Shell과 Unocal이 각각 20%씩 투자하고 또한 같은 비율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春曉와 寶雲亭의 석유개발 계약은 계약기간 내에 모두 중국석유화공주식회사와 중국해양석유유한회사가 각각 30%, Shell과 Unocal이 각각 20%의 투자와 권리를 향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 중국의 동중국해 자원개발은 훨씬 일찍 시작되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은 적극적으로 동중국해 油田 탐사개발에 착수하였는데, 특히 1996년부터 平湖, 春曉, 天外天, 斷橋, 殘雪, 寶雲亭 및 孔雀亭 등 8개의 油田을 개발하였다.³³⁾ 이 중 平湖와 春曉, 斷橋 油田은 일본과 대륙붕경계획정이라는 문제 및 해저 자원개발이라는 문제에서 가장 대표적인 대립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이 몇 년간의 해양 탐사

를 통해 2003년 8월부터 春曉油田 건설에 착수하였는데, 그 지점은 일본이 주장하는 중간선과 5 km 정도의 거리를 두고 있다. 이러한 거리적 근접성은 일본정부로 하여금 중국정부가 해저에서 사실상 연결되어 있을 수 있는 해저자원을 모두 개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게 한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측에서는 관련 해역이 일본해역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일본의 개발관련 자료 제출 요구조차 거부하고 있다. 결국, 일본은 2004년 7월 7일 현지 자원탐사를 실시하였고, 중국정부는 이에 대하여 실력 행사할 수 있음을 경고한 바 있다.³⁵⁾

일본의 경고와 개발중단 요구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春曉油田 개발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는 해저의 가스관 부설을 직접 절강성과 상해시까지 연결시키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중국측에서는 2005년부터 천연가스 생산을 시작으로 2007년부터는 매년 25억m³를 생산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데, 이는 원유로 환산하는 경우 2억 5천만 리터에 해당하며, 적어도 13년 생산이 가능한 양이다.

일본측 분석에 따르면, 중국측 해역은 모두 淺海의 대륙붕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해저 관선 부설에 어려움이 없으나, 일본측 해역은 수심이 2,000 m 이상의 해구가 형성되어 있어 개발된 천연가스를 가스 관선으로 일본까지 운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는 春曉油田의 개발문제에 대하여 일본이 중국과 대립이 아닌 당연히 합작의 길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³⁶⁾

일본의 개발상황

2005년 7월 14일,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은 帝國석유회사³⁷⁾ 신청한 동중국해 내의 석유천연가스 시험 개발을 허가한다고 선포하였다.³⁸⁾ 이 해역³⁹⁾은 중국이 배타적경제수역으로 주장하고 있는 곳으로, 중국이 건설중인 “春曉油田”과 “斷橋油田”의 남측에 위치하고 3개 광구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개발허가에 대해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은 정부에 의한 시추위탁방식을 취한다면 재정지원이 쉽고 중국이 현장해역에 합정파견 등의 위협행위로 나설 경우 해상보안청의 순시선파견으로 대항하는 등 帝國석유회사의 작업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판단했기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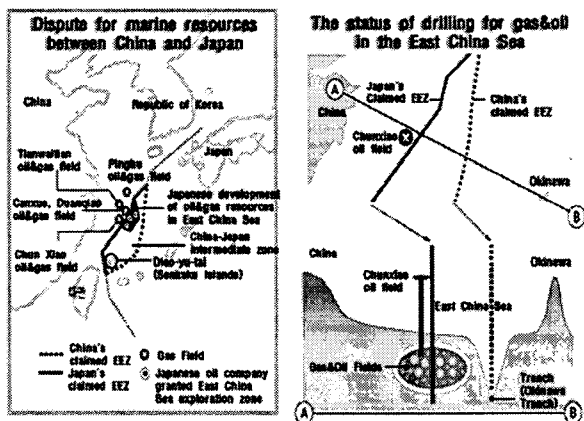


Fig. 1. Dispute for marine resources between China and Japan³⁴⁾.

³³⁾ 亞洲時報(中國), 2005. 9. 18.

³⁴⁾ 중앙일보, “중·일, 동중국해 다툼 왜 문제인가요”, 2005. 9. 22.

³⁵⁾ 自由新聞(中國), 2004. 8. 9.

³⁶⁾ Ibid.

³⁷⁾ 帝國석유회사는 帝國석유주식회사법에 근거하여 각 회사의 석유광업부서를 통합하여 하나의 “국책기업”으로 만들었으며, 1950년에 帝國석유주식회사법은 폐지되었고 帝國석유회사는 “민간기업”의 신분이 되었으나, 사실상은 “官制개발” 색채가 농후하게 남아 있다. 특히, 帝國석유기업이 동중국해 석유자원 개발에 뛰어든 것 외에, 일찍이 남중국해의 유전개발에도 개입되었다는 점이다. 1978년 7월 일본이 베트남과 협의를 통해 남중국해 해저 석유 합작개발을 진행한다는 합의를 이끌어 내었는데, 2004년 10월 帝國석유회사 홈페이지에는 베트남과 합자로 油田을 성공적으로 개발하였음을 고지하고 있다. 上海報(中國), 2005. 7. 28.

³⁸⁾ Oil and gas in troubled waters. *The Economist*, October 6, 2005.

³⁹⁾ 동중국해 3개의 총면적이 400 km²에 이르는 지역으로 유전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함.

문이라고 하고 있다.⁴⁰⁾

특히 중국이 진행하는 석유가스전 개발은 해양경계확정 분쟁에 관계없이 해저는 서로 통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春曉” 및 “斷橋”의 油田에 의해 “중일 중간선” 동측의 석유천연가스 자원 또한 중국에 의해 개발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즉, 해양 상부에 관계없이 해저에서는 “빨대 원리(吸管原理)”에 의해 양측의 자원이 중국측에 흡수될 것임을 의미한다. 더욱이, 일본은 중국측이 제기한 공동개발 역시 결국은 시간을 벌기 위한 것임에 주목하고 있다.

3. 중국과 일본의 협상 진행 과정

양국의 협상과정

지난 2005년 9월 20일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中川昭一)은 중국이 이미 동중국해에서 천연가스 개발을 시작하였다고 발표하고, 자위대가 동중국해 유전수역을 순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본 석유회사의 시추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률 제정을 서두를 것을 국회에 호소한 바 있다. 일본 외무성 대변인 역시 일본측이 이미 개발을 중지할 것을 중국측에 항의하였다고 밝히고, 중국의 개발은 월경행위이며, 해저에 부설된 석유관이 일본의 자원까지 흡수할 수 있음을 경고한 바 있다. 또한 중국의 개발이 지속될 경우에는 대항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일본 역시 중국의 春曉 등의 油田 부근 해역에서 탐사개발을 강화할 것과 중국측이 9월 말에 일본측과 협상에 나설 것을 요구하였다.⁴¹⁾ 일본측의 반응에 따라 중국정부는 2005년 9월 말 대표단을 일본에 파견하여 협상에 나섰는 바, 중국측이 일본측 협상 요구에 즉시 대응한 것은 일본의 의도가 영토주권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는데 기인한다. 즉, 중국측은 일본이 동중국해에서 油田자원 문제 외에, EEZ를 “중간선”에 따라 확정하여 일본이 일방적으로 주장한 경계확정선을 인정하도록 시도하고 있음을 경계하고 있다. 따라서, 원래 중국 국경일 이후에 거행하고자 하였던 동중국해 油田 분쟁협상을 일본이 제기한 9월 30일 대표단 파견과 3차례의

협상에 응하게 되었다.⁴²⁾

중국의 주일대사는 亞洲週刊을 통해 “중국의 목표는 동중국해를 하나의 공동해역으로 하는 것이며, ... 중일 쌍방의 협상을 통해 중일간 동중국해 경계선을 획정함으로써 동중국해의 장기적 안정을 꾀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히고 있으며, “협상이란 하나의 과정이며, 이러한 과정은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 과정이고, 안정 국면을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하다”고 하였다.⁴³⁾

사실, 油田을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협상은 2004년 10월과 2005년 5월에도 북경에서 전개된 바 있으나 실질적인 진전을 보지 못했던 것으로 보도되었다. 특히 2005년 5월 司(중국)·局(일본) 협상에서 중국과 일본 각각의 이익을 반영한 공동개발을 주장하였으나 결과 없이 마무리되었다. 회의에서, 중국측은 중국과 일본 공동개발안을 제기하면서 일본이 제기한 “중간선”에서 일본측에 위치한 중국 대륙붕 영토상에서 공동개발을 진행할 것을 주장하였다.⁴⁴⁾ 이는 현재 일본이 주장하는 중간선에서 중국 쪽에 위치하고 있는 “春曉” 등의 油田은 「중일 공동개발」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견해에 따라 중국은 일본이 요구해 온 “春曉” 油田 개발 자료 제공요구를 거절하였다.⁴⁵⁾

양국 입장

대륙붕 경계확정 정의와 관련하여, 유엔해양법협약은 “서로 마주보고 있거나 인접한 연안국간의 대륙붕 경계확정은 공평한 해결에 이르기 위하여,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38조에 언급된 국제법을 기초로 하여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하고 있다.⁴⁶⁾ 이는 1958년 대륙붕협약에 대한 수정이기도 하다. 1958년 대륙붕협약은 “협정이 없거나 어떠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경우 중간선이나 등거리 원칙을 통해 경계를 확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⁴⁷⁾ 그러나 1969년 북해 대륙붕 사건판결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동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였다.⁴⁸⁾ 이 판결은 대륙붕경계확정이 당사국간의 합의에 따라야 한다는 것과 형평의 원

⁴⁰⁾日本産経新聞, 2005. 9. 25

⁴¹⁾http://news.bbc.co.uk/chinese/trad/hi/newsid_4300000/newsid_4307000/4307052.stm

⁴²⁾Japan-China Consultations on the East China Sea and Other Matters. 日本外務省(September 30 to October 1, Tokyo), <http://www.mofa.go.jp/region/asia-paci/china/consult0509.html>

⁴³⁾夜光新聞(中國), 2005. 10. 1.

⁴⁴⁾讀賣新聞(日本), 2006. 3. 8.

⁴⁵⁾中日會商東海油田爭議-日本堅持中國公開油田資訊. 中國地球村, 2005. 9. 30.

⁴⁶⁾유엔해양법협약 제83조 1항.

⁴⁷⁾1958년 대륙붕협약 제6조 참조. 기타 해당 조문의 논의과정에 대하여는 1956년의 ILC 초안 및 UNGA Doc. A/CN.4/99 ; Add.1-9 참조.

⁴⁸⁾ICJ는 “등거리 원칙이 대륙붕 권리상의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며, 국제관습법화 하지도 않았다”고 언급하고 있다. 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s(Federal Republic of Germany/Denmark ; Federal Republic of Germany/Netherlands). 1969. I.C.J. Rep., para.46, para.78. ; 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s. *Int. Legal Materials*, 8, p.340, 1969.

칙이란 애매한 기준을 제시하여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비난이 있다.

중국의 입장

중국은 동중국해 대륙붕이 중국 대륙영토의 자연적 연장이며, 따라서 대륙붕 경계선은 오키나와 해구⁴⁹⁾의 중심선으로 획정하여야 한다고 한다. 또한 오키나와 해구는 중국과 일본이 동일한 대륙붕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며, 해구를 양국간의 경계선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⁵⁰⁾

그러나 이러한 중국측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와 공동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협상을 이끌어 왔다는 점을 볼 때 최종적으로 공동개발로 결론지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여기에는 중국측의 전제가 있다. 즉, 설령 공동개발을 하더라도 i) 일본이 주장하는 중간선을 중심으로 중국측 수역의 대륙붕에 대하여는 중국측이 개발하며, ii) 중간선부터 일본측 해역으로 오키나와 해구 중심선까지는 일본과 공동개발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견해는 2006년 3월 6~7일 북경에서 개최된 동중국해 석유가스전 개발을 위한 제4차 중일정부간협약에서 중국이 공동개발 신제안으로서 제시한 대상해역으로 중일 중간선의 일본측인 한일공동개발구역내(중국명 龍井 북쪽)와 조어대 북쪽 영해를 제안함으로써 중국측 해역에 대해서는 일절 공동개발을 위한 협상이 없음을 다시 한번 시사한 점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⁵¹⁾

일본의 입장

일본은 등거리선 혹은 중간선 원칙을 통해 대륙붕을 획정할 것을 주장한다. 또한 해구는 단지 양국 대륙변계에서 우연하게 생긴 함몰일 뿐이며, 일본이 대륙붕을 주장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 일본의 새로운 견해는 일본 동쪽에 있는 해구인 마리아나 해구는 수심이 1만m에 달하며, 그 외연이 바로 서북태평양이라는 주장이다. 이는 오키나와 해구가 사실은 대륙붕상의 하나의 함몰에 불과하며, 대륙붕의 종점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마리아나 해구가 대륙붕에 대한 사실상의 종점이라는 견

해를 취하고 있다.⁵²⁾ 이는 일본이 동중국해에 대하여 중국과 동일한 대륙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연연장 원칙의 적용 여지가 없으며, 대륙붕에 대한 중국의 배타적 권리 또한 성립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油田 개발과 관련하여, 일본은 현재 중국이 개발과 생산을 진행하고자 하는 “春曉” 油田 등을 포함⁵³⁾하여 동중국해의 범위에서 공동개발을 진행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동중국해 석유가스전 개발 분쟁에 있어 일본정부가 중국정부에 제안한 공동개발안의 개요는 “일본은 중국이 구축한 채굴시설에 대한 자금을 제공하고 생산된 석유와 천연가스를 일중쌍방으로 배분하는 외에 중국이 이미 채굴한 지하자원에 대해서는 지하구조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일중쌍방의 배분비율을 결정해 환산하여 중국이 일본측에 배당한다”는 내용이다.⁵⁴⁾

설령 일본이 帝國석유회사에게 동중국해 석유가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개발권을 부여하였으나, 이는 중국에 대한 강한 압력을 행사하고자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이 부여한 탐사개발권의 해역이 동중국해 중간선에서 일본측에 해당하는 세 곳이 중국측 油田 부근에 설정되었다는 것 역시 같은 원인에 기인한 것이다.

일본의 입장과 관련하여 주의하여야 할 것은, 과연 그 주장대로 중국과의 동중국해 공동개발이 최종 목표가 될 것인가 하는데 있다. 사실상 일본은 중국이 10여년 동안 심혈을 기울이고 중간선의 중국측에 있는 春曉 등의 油田을 일본과 공동개발할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는다. 최종적인 목표는 차라리 “공동개발”을 협상주제로 하여, 1985년 6월 리비아와 말타의 대륙붕 분쟁에서 국제사법재판소가 중첩해역에서의 대륙붕 자연연장론을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는 판결을 내린 사례⁵⁵⁾와 같이 중국이 일본에서 제기한 중간선 원칙을 수용하게 하여 양국간의 해양경계획정을 타결해 보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이⁵⁶⁾ 보다 설득력이 있다.

일본측이 주장하는 중간선이 채용될 경우, 일본측으로서는 영토 판도상에서 매우 중요한 전략적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이고, 또한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조어대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06년 3월 7일

⁴⁹⁾ 오키나와 해구 북부 수심은 약 600~800 m, 남부 수심은 약 2,000 m.

⁵⁰⁾ 馬英九. 1986. 從新海洋法論釣魚台列嶼與東海劃界問題. 正中書局, 台北. p.16-17, p.56-83.

⁵¹⁾ 產經新聞(日本), 2006. 3. 11.

⁵²⁾ 吉谷星. 1996. 三個中國海的海洋管轄權, 選擇公平解決. 朴椿浩 等編. 聯合國海洋法公約與東亞, 北京. p.95.

⁵³⁾ 공동개발 대상구역은 중간선에 중첩될 가능성이 높은 春曉, 天外天, 斷橋 등 4곳을 제시하였다. 日本產經新聞, 2006. 01. 01.

⁵⁴⁾ 新華網(中國), 2004. 6. 7.

⁵⁵⁾ Case Concerning the Continental Shelf(Libyan Arab Jamahiriya v. Malta case), Judgment of 3 June 1985, ICJ Reports, para. 39.

⁵⁶⁾ 產經新聞(日本), 2005. 10. 1.; 王翰靈. 2005. 日本提議在東海中間線兩側進行共同開發與我國的對策, 中國政法大學國際法學院主辦, 海洋權益的保護與海洋法的發展研討會資料匯編, 2005. 12. 17-18. p.29.

아베(安倍)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공동개발의 진행방법에 있어서는 쌍방의 잠정적조치로서 배타적경제수역을 향한 경계획정교섭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과 일중양국에 있어 호혜적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기본적인 인식을 표명하였으며, 이러한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태도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⁵⁷⁾

그러나 중국은 중간선의 일본측 해역도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 시추를 위한 일본측 조사활동의 방해뿐만 아니라 중간선의 일본측 해역에서 시추를 수행하는 사태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단지 영토·영해 내에서의 위법행위를 제지할 영해법밖에 없는 일본으로서는 유효한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2005년 9월 22일의 자민당 해양권의특별위원회에서 石破茂 방위청장관은 해상보안청이 EEZ내에서 활동하기 위한 법률이 없어 실제로는 아무 것도 대처할 수 없다고 법의 미정비를 지적하고 배타적경제수역내에서 천연 자원 탐사·개발이나 과학조사 등을 수행할 경우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해양구조물안전수역설정등에관한법안」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⁵⁸⁾ 많은 일본 전문가들도 현재의 상태로는 지금 중국측이 바라고 있는 해역에서 공동개발

로 진행될 위험성을 우려하고 있다.

4. 공동개발과 장애요인

중국과 일본의 동중국해 油田을 둘러싼 마찰은 크게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중국으로서는 현재 개발하고 있는 油田이 중국측 대륙붕에 속하는 것이며, 설령 일본이 주장하는 “중간선” 원칙에 따르면 할지라도 여전히 중국측 해역에 속하여 있다는 점에서 일본의 항의가 이유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일본은 현재의 중국측 油田 개발지역이 중간선에서 중국측에 속하여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해저의 油田이 상호 연결되어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중국측 개발이 일본의 油田까지를 모두 흡수하여 갈여지가 있다는 점에 있다.

이는 앞에서 말한 “빨대 원리”의 의미와 같은 것이다. 일본측에서 중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해저 조사에 관한 관련 기록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것 역시 이러한 원리에 기초한 것이며, 중국은 이러한 요구를 거절하고 있다.⁵⁹⁾ 마지막으로, 일본측이 주장하는 견해의 이면에는 중국으로 하여금 최종적으로 중간선 원칙을 수용토록 하는데 있

Table 2. Position of China and Japan for gas and oil development in East China Sea.

Classification	China's position	Japan's position
Continental Shelf Delimitation	Principle of the natural prolongation of the land	Principle of equidistance (median line)
Development method	1. Continuous development of oil and gas 2. Consider joint development	Consider joint development
	⇓	⇓
Subject area and development	1. Even if the principle of median line is applicable for joint development ; but, 2. China has sovereignty over the resources on Chinese side of the hypothetical median line ; 3. Joint development waters should be extent to the Japan's side of the both sides claimed median line in the East China Sea	Joint development in the East China Sea as a whole
		Ultimate object : Adoption of the equidistant line in the East China Sea

⁵⁷⁾ 毎日新聞(日本), 2006. 3. 7.

⁵⁸⁾ 2005년 12월 1일, 일본 자민당 해양권의 특별위원회는 일본 내각관방, 외무성, 경제산업성, 법무성, 방위청, 해상보안청, 경찰청 및 수산청 등 정부 관련부서 책임자들과 회동하여 자민당이 제출한 관련 법안 초안을 논의하였다. 법률 제정목적은 “일본이 주권적 권리를 향유하는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 상에서 해저 자원조사 및 탐사, 개발활동을 진행하는 구조물을 보호”하는 데 있다. 2006년 회기중에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 법안은 일본 기업이 동중국해 자원 개발을 위한 법적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중국과의 유전개발 경쟁에서 중요한 법적 근거를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하는 것으로, 일본이 일방적으로 제기한 동중국해 중간선의 일본측 해역에서 기업이 자원을 발굴할 수 있는 조건을 부여하는 의미를 갖는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일본 해상 보안청은 해당 수역에서 개발탐사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博訊新聞(中國), 2005. 12. 11. ; 國際先驅報(中國), 2005. 12. 10. ; 日本時報(日本), 2005. 12. 2. ; 産經新聞(日本), 2005. 12. 2. ; 朝日新聞(日本), 2005. 12. 2~5.

⁵⁹⁾ 産經新聞(日本), 2004. 8. 28.

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공동개발에 대한 양국의 입장

동중국해 유전 분쟁에 대한 최종 해결은 역시 협상과 공동개발에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양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또한 태도에 변화를 보이지 않는 것은 역설적으로 양국간 협상이 준비되고 또한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반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중국과 일본의 동중국해 경계획정은 각자의 견해를 견지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한 국제법적 해석 역시 모호한 상태에 있다. 단,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정치적인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경제적 번영과 발전을 꾀하여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중국과 일본 양국이 군사상의 충돌만을 피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보다 강하게 주입시키고 있다. 이는 중국과 일본의 협상이 결국은 공동개발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상, 중국과 일본 양국은 각자의 견해를 견지하면서도 지속적으로 동중국해 공동개발의 길을 모색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URUMA에너지주식회사의 한 책임자는 2004년 4월 북경에서 동북아 해저석유 합작 프로젝트 조직의 강연회를 통해 “1985년 이래, 중국과 일본정부의 후원을 받는 회사를 통해 동중국해 공동개발 가능성에 대한 정기적 비밀 협상을 수행하여 왔다”고 밝힌 바 있다.⁶⁰⁾ 이는 중국과 일본 양국이 모두 공동개발의 의도를 가지고는 있으나, 중요한 걸림돌은 개발구역의 확정 문제에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⁶¹⁾

장애요소

중국과 일본 양국간 동중국해 공동개발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은 양국의 내부적 요인과 국제정치적 요인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첫째, 내부적 요인으로는 관할권문제, 이익분배 문제, 전략적 안보문제로 요약된다. 두 번째로 국제정치적 요인으로는 중일 양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내부적 요인

관할권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이 일본의 “중간선 원칙”

을 수용하고 공동개발에 나설 경우 기타 국가와의 유사 문제 해결시에 선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하여야 한다. 이는 관할권 문제상에서의 양보를 의미하는 것으로 과거 중국이 지속적으로 주장하여 온 원칙과 위배되는 것이다. 특히 중국이 관할권문제에 대하여는 양보의 여지를 보이지 않았다는 과거 전례로 볼 때, 관할권문제는 동중국해 공동개발을 위한 첫번째 관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하여 중국이 최근 적극적인 경계획정 작업에 나서고 있다는 것과 베트남과의 경계획정⁶²⁾이 사실상 중간선 원칙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05년 3월 14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중국(중국해양석유공사가 대표)과 베트남, 필리핀의 석유회사가 「남중국해 협의 수역에서 삼자가 연합한 해양 지진업무 협의」에 서명하고, 향후 3년 동안 총면적 14.3 만km²에 해당하는 협의지역에서 석유자원 상황을 연구평가하기로 한 바 있다.⁶³⁾

이익분배 문제에서, 油田 개발의 막대한 경제적 이익은 직접적으로 양국 정부의 이익에 관련되는 동시에 油田 개발기업과도 관련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치적 위험이 수반되는 조건에서 이익분배의 복잡성은 그리 쉽게 형평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내부적 요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전략적 안전상의 고려와 관련된다. 예를 들어, 春曉油田은 중국에 매우 중요한 지리적 위치를 점하고 있다. 전략 안전이라는 시각에서 볼 때, 해당 해역을 양보하는 경우 동중국해를 통하는 출로를 상실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고려요소는 중국이 동중국해 협상에서 장기적으로 세심한 준비를 이루어야 하며, 경제 뿐 아니라 외교적 요소까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외교협상의 시험무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⁶⁴⁾

미국 동과의 관계

일본의 日經BP社의 主編은 2001년 일본수상 小泉이 취임한 이래, 地緣的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태평양은 좁아졌고 동중국해는 넓어졌다고 말한 바 있다.⁶⁵⁾ 春曉유전 문제로 첨예화된 중일간 문제는 양국관계라는 내부적 요인에 또 다른 요소로는 미국과의 관계와 관련된다.

⁶⁰⁾神州學人(中國), 2005. 9. 27.

⁶¹⁾朝日新聞(日本), 2006. 3. 10.

⁶²⁾중국정부와 베트남 정부간 통킹만에서의 영해,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 경계획정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he Demarcation of waters, Exclusive Economic Zones and Continental Shelves in the Tonkin(Bac Bo) Gulf), 2000년 12월 25일 체결 ; 2004년 6월 30일 비준서 교환 및 발효.

⁶³⁾上海報道(中國), 2005. 7. 28.

⁶⁴⁾張植榮, 洪停杓. 2004. 當代中國外交新論. 勵志出版社, 香港. p.276. ; 張植榮. 2005. 中國邊疆與民族問題. 北京大學出版社, 北京. p.149-156.

⁶⁵⁾朝日新聞(日本), 2005. 9. 26. ; 中日海軍都券入東海之爭 : 中國不會在主權上讓步. 中國新聞週刊, 2005. 9. 27.

일본이 동중국해 문제에서 중국보다 느린 행보를 취했던 데에는 일견 일본의 에너지 문제가 장기간 미국의 보호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것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즉, 미국은 일본이 中東 등의 지역에서 석유를 찾는 것에 대하여 분명한 제한입장을 보였으나, 최근 몇년 동안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화 등의 원인으로 미국이 일본에 제공할 수 있는 에너지 안전보호의 정도에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중국 군함이 春曉유전에 군함을 출항시킨 것에 대하여 미국이 아무런 논평을 내지는 않았으나, 이미 일본과 중국 간의 동중국해 긴장관계를 인식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특히 최근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취하고 있는 석유 확보 노력으로 국제 유가의 상승을 유발하였을 뿐 아니라, 석유 확보를 위해 접촉하는 국가들이 미국과는 非우호관계를 가진 국가⁶⁶⁾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은 미국의 주목을 받기에 충분하다 하겠다. 그러나 동시에 미국입장에서는 일본과 중국간의 작은 마찰이 어떤 의미에서는 미국에게 유리하며, 양국간 마찰이 극대화되는 경우엔 미국에게도 매우 불리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음을 잘 인식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선택을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은 어느 선택을 하든 미국으로서의 일정한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⁶⁷⁾

이 외에, 일본이 시베리아 석유 수송관 건설문제에 관하여 중국과 대립하고, 러시아가 최종적으로 중국대륙으로의 수송관 부설을 결정하였다는 사실이 일본정부를 자극하게 한 것도 살펴보아야 할 사실이다. 일본은 이 결정에 대하여 러시아에 대한 자금지원을 동결함으로써 러시아 정부의 불만을 야기하였으며,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은 북방 4개 도서 문제와 더불어 양국관계를 보다 긴박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중국과 러시아는 나아가 2005년 8월 연합 군사훈련을 전개⁶⁸⁾함으로써 일본 압박에 대한 의도를 보다 분명하게 하였고, 동중국해 문제에 대한 양국간 권리가 대치할 경우, 중국은 러시아의 역량을 후원 세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 가능하다고 하겠다.⁶⁹⁾

5. 결 론

자원 확보라는 문제는 전지구적인 경제발전과 함께 사

회·정치적 측면에서 이전보다 한층 국제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전개되고 있다. 더구나 자국의 자원 생산량의 한계가 비교적 명확한 동북아에서 자원 확보의 문제는 향후 국가경제라는 측면 뿐 아니라, 국가안보의 문제에 사활이 걸린 중요한 기능으로 작용할 것임은 확실하다. 물론 여기에는 2003년 이미 일본을 추월하여 미국에 이어 두 번째 석유 소비국이 된 중국, 그리고 석유자원의 대부분을 수입하는 일본과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⁷⁰⁾

이미 각국은 주변 해역을 중심으로 유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상호 개발에 대하여는 민감한 외교적 성명을 발표하면서도 정부간 접촉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동중국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한일남부 대륙붕공동구역, 황해 경계 획정 문제와 함께 자원 개발 문제에 대하여 이견을 가지고 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군산에서 250 km 떨어진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 수역 내의 서해 2광구에서 한국 석유공사가 석유 탐사 작업을 할 때, 중국은 “서해 2광구에서 원유를 생산하면 400 km 정도 떨어진 중국 산둥반도 앞 평라이(蓬萊) 유전의 원유가 한국 쪽으로 흘러갈 수 있다”며 여섯 차례나 항의한 바 있다. 이러한 중국의 주장은 일본이 동중국해에서 해저의 연결성에 따른 빨대이론 주장과 동일하다.

이는 우리 주변수역에서의 자원 개발 문제가 여전히 중국과 일본이라는 주변국가와의 개별적 접근 전략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중국과 일본이 동중국해를 둘러싸고 보이는 갈등 양상은 해양 경계 획정 문제를 둘러싼 신경전이라는 측면과 함께 자국의 경제와 안보적 측면을 위한 자원 확보라는 측면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는 향후 같은 문제를 우리나라의 주변국과의 협상 문제에서 그대로 제기될 것이다. 우리로서는 자원 확보에 대한 국가적 역량을 극대화하여야 하는 과제와 함께 외교적 마찰을 최소화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해양 경계 획정 원칙으로 육지의 자연 연장 원칙이나 중간선 원칙 심지어 중간선 이원의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해저의 지형에 따라 자원의 근접성을 이유로 하는 빨대이론 등 국익을 위해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협상에 입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하여야 한다.

일부 중국 학자들은 황해 경계 획정과 관련하여 한국이 황해에서는 중간선 원칙을, 동중국해에서는 자연 연장 원칙을 주장하는 것이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고 주장하나,⁷¹⁾

⁶⁶⁾ 예를 들면 이란, 수단, 나이지리아 등을 들 수 있다.

⁶⁷⁾ Friedberg, A.L. 2002. September and the future of Sino-American relations, *Survival*. Spring 2002. p.44-45.

⁶⁸⁾ 2005년 8월 18일에서 8월 25일 “和平使命-2005”라는 명칭으로 진행된 중국과 러시아의 연합군사훈련은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中國軍網, 2005. 8. 31.; 青島新聞, 2005. 8. 26.; BBC Chinese, 2005. 8.3, 8.18.; 中國軍網, 2005. 8. 25.

⁶⁹⁾ Fiona Hill and Florence Fee. 2002. Fueling the future: the prospects for Russian oil and gas. *Demokratizatsiya*, 10(3), Summer 2002.; Julia Nanay. 2002. Russian oil and gas experts to Asia. *Middle East Economic Survey*, Nov., 9. 참조.

⁷⁰⁾ 國務院新聞辦公實. 中國的礦產資源政策, 2003년 12월; 張開宇. 第2石油消費大國背後. 石油商報(2004. 12) 참조.

⁷¹⁾ 袁古法. 2001. 國際海洋劃界的理論與實踐. 法律出版社, 北京. p.182.

이는 공유대륙붕과 비공유대륙붕에 대한 입장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동중국해에서 중국과 일본이 각각 그들의 의도하고 있는 자원 확보와 장기적 경제획정 전략을 위해 관련문제에 대한 의외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것에 유의하고, 우리의 권리 확보를 위하여 관련 국가에 대한 지속적 견제와 의견개진을 하여야 한다.

동시에 주지하여야 할 것은, 자원개발을 둘러싼 외교 혹은 구체적 개발행동에서 나타나는 고도의 전략적 문제를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동중국해 개발문제에서 일본이 취한 중국에 대한 항의와 제국석유회사에 대한 개발권 부여, 그리고 중국이 표시한 성명을 보면 이러한 우려가 사실로 전개될 수도 있다. 이미 중국 외교부는 몇 차례 “중국 춘샤오 유전을 포함한 관련 개발은 모두 중국 근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이들 근해는 일본과 쟁의가 없는 곳으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정상적 활동이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⁷²⁾ 이는 중국정부가 일본이 주장하는 중간선을 상당히 인식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향후 양국의 협상진행과정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지역별 대안을 제시함에 있어 반드시 기본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 즉, 황해나 동해 및 남해 등 해양경계획정 대상해역을 중심으로 자원의 분포상황이나 전략적 요소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먼저 이루어진 후 협상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집중적 투자를

통한 중장기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로드맵을 작성하는 것을 제안해 본다.

연안에서 200해리 이내의 해역에서는 지질학적 혹은 지형학적 요인보다는 거리적인 요소를 좀 더 고려하고 있으므로⁷³⁾ 등거리원칙과 특별한 상황⁷⁴⁾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ICJ가 이미 등거리/특별한 상황 원칙에 대하여 많은 고려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향후 해양경계획정에서 보다 명확한 기준으로 자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⁷⁵⁾

21세기는 자원확보가 한 국가의 사활을 건 전장이 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동중국해 유전자원에 대하여는 우리의 합리적 권리 확보를 위한 방안을 모색⁷⁶⁾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한일남부대륙붕공동구역의 활용방안을 최우선적으로 수립하는 것을 주문하고자 한다.

사 사

이 논문은 해양수산부의 “황해퇴적물 이동현상 및 퇴적 환경 연구(PM33500)”의 일환으로 작성되었다. 이 논문을 심사하여 주시고 조언해 주신 익명의 심사자들에게 감사 드린다.

Received Apr. 17, 2006

Accepted Jun. 5, 2006

⁷²⁾ 鳳凰衛視(中國), 2005. 7. 14.

⁷³⁾ Tanja, G.J. 1990. *The Legal Delimitation of International Maritime Boundaries*. Kluwer Law & Taxation Pub., p.301.

⁷⁴⁾ 2001년 ICJ는 *Qatar v. Bahrain Case*에서 “1982년 해양법협약 제15조와 1958년 영해와 접속수역에 관한 협약 제12조 1항은 ... 관습법 성질을 갖는다. 이는 일반적으로 ‘등거리/특별한 상황’ 원칙이라고 일컬어진다”고 지적하고, 이들 규칙은 대륙붕과 배타적경제수역 획정에 관한 “형평의 원칙/관련 상황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고 적시하고 있다. *Qatar v. Bahrain Case*(2001), para.231.

⁷⁵⁾ ICJ는 2002년 *Cameroon v. Nigeria case*에서 “형평의 원칙/유관 상황이라는 방법은 ... 먼저 하나의 등거리 선을 획정한 후에 해당 등거리선을 조정하거나 이동할 만한 요소가 있는지를 고려함으로써 형평의 원칙을 이루어 낸다는 점에서 영해 획정에 적용되는 등거리/특별한 상황 원칙과 매우 유사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Cameroon v. Nigeria case*(2002), para.288.

⁷⁶⁾ 예를 들면, 이어도가 국제법상 섬은 아니어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으나 국가 전략적으로 이어도를 기점으로 하여 동중국해에서의 우리나라의 권리를 주장한다거나 중일분쟁의 중재자로 나서는 방법 등이 있을 것이다.

⁷⁷⁾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1974년 1월 30일 서명, 1978년 6월 22일 발효) 제 31조에 따라 2028년 6월 21에 종료(50년간 유효)하도록 규정되어 있다.